

덕과 규칙, 그리고 거짓말*

맹주만**

주제분류 윤리학, 응용윤리

주요어 덕, 규칙, 거짓말, 덕 윤리학, 의무론, 공리주의, 행위지침

요약문

이 글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윤리이론들인 덕 윤리학과 칸트의 의무론, 그리고 공리주의의 이론적 실패를 대비적으로 평가하면서 제3의 가능한 윤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나는 칸트의 ‘거짓말 논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이론이라면 도덕규칙으로서 ‘선의의 거짓말’의 정당성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 윤리이론으로서 불충분한 이론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론으로서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일정한 수정과 변경을 가한 칸트적 의무론을 제안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 중앙대학교

1. 윤리이론과 도덕판단

도덕적 행위를 평가하는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칸트의 의무론은 도덕적 옳음을 그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의 의도와 동기의 객관성과 보편성, 즉 보편화 가능한 준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공리주의나 결과주의 윤리이론들은 어떤 행위가 가져올 최선의 결과를 도덕적 판단의 척도로 삼는다. 이들 행위와 규칙 중심의 윤리이론과 달리, 행위자 중심의 윤리이론으로서 행위자의 덕이나 성품을 강조하는 덕 윤리학은 도덕적 옳음의 실행 가능성을 행위자가 지닌 좋은 성품에다 둔다. 이렇게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칸트의 의무론은 정언명법과 같은 도덕원칙을, 공리주의는 최선의 결과를 낳는 도덕규칙으로서 유용성의 원칙을, 덕 윤리학은 좋은 성품의 유덕한 사람을 제시한다.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근대 이래로 지금까지 도덕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주류 견해들이었다. 반면에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실패를 주장하며 대안 이론으로 등장한 현대의 덕 윤리학은 이 주류 이론들을 모두 규칙 중심주의 윤리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이론들은 도덕적 행위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정당화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를 도덕판단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윤리학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의무론자들과 결과주의자들은 덕 윤리학이 행위자 중심의 윤리로서 행위의 도덕성의 객관적 평가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덕판단의 척도를 특정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게 만들거나, 객관적 시비를 가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대주의 윤리에 머물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도덕적 가치의 지향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들 윤리이론들은 모두 도덕적 행위지침으로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올바른 도덕판단을 확립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규칙 윤리학, 즉 공리주의나 칸트의 의무론은 윤리적 행위가 지니고 있는 행위자 및 그와 관계있는 타자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칸트의 의무론은 이성적 존재자 중심의 도덕법칙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특정한 행위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해야 하는 행위의 고유성과 특수성, 그리고 차별성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고서 도덕적 기준을 타자가 배제된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규칙 공리주의 역시 각각의 행위와 행위자가 갖는 개별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결과에만 집착한다.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며, 근본적으로 한 개인의 권리나 정의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덕 윤리학은 유덕한 사람의 행위를 도덕판단의 잣대로 삼기에 어떤 사람이 유덕한 사람인지 알기 전에는 어떤 유의미한 도덕판단도 제대로 내릴 수 없다. 설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하더라도 유덕한 사람의 어떤 행위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지침으로서 타당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를 객관적인 행위지침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이는 모두 도덕 행위가 갖는 나와 너 혹은 3자가 지닌 고유한 지위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는데서 생기는 비롯되며, 다시 말해 하나의 행위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 보편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 같이 세 가지 대립하는 덕 윤리학과 규칙 중심의 윤리학, 특히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 이론적 실패를 대비적으로 평가하면서 제3의 가능한 윤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나는 칸트의 ‘거짓말 논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실제적인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려는 윤리이론이라면 일반적 도덕규칙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선의의 거짓말’의 정당성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¹⁾ 그렇지 못할 경우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 윤리이론으로서 불

충분한 이론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견해로서 ‘칸트의 의무론’이 아닌 ‘칸트적 의무론’을 제시할 것이다.

2. 칸트의 의무론과 거짓말

과연 거짓말은 비도덕적인가? 어떤 선의의 거짓말도 비도덕적인가? 혹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의무인가?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척도를 제공하는 정언명법에 따라서 누구나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편타당한 도덕원칙으로 삼는다. 칸트에 따르면, 타인에게 하는 거짓 약속이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의 위반이라면,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의 위반이다. 칸트는 “(그의 인격에서의 인간성이) 도덕적 존재자로서 간주되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의 최대의 훼손은 진실성을 위반하는 것, 즉 거짓말이다.”²⁾라고 단언한다.

칸트에게 거짓말은 “고의적인 비진리”로서 그것이 경솔함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선량한 마음에서든, 심지어는 선한 목적에서 의도된 것이든 인간의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한 범죄이며, 자기 자신의 눈에 인간을 경멸스럽게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천박한 것이다. 한마디로 거짓말은 “그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³⁾ 이 같은 칸트의 태도는 적지 않는 논쟁을 야기한 바 있는 「인간에 있어서 거짓말할 권리에 대해서」라는 논문에서 더욱 엄격한 방식으로 그리고 풍스땅이 설정해 놓은 구체

1) 이는 반대로 선의의 거짓말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I. Kant, *Metaphysik der Sitten*, 562/429쪽. (인용 쪽수 중 앞의 것은 바이세텔판, 뒤의 것은 학술원판이다. 이하 동일)

3) 같은 곳.

적인 사례에 견주어서 표현되고 있다.⁴⁾ 이 글에서 밝힌 칸트의 말을 빌리면 이 논문은 콩스땅(Benjamin Constant)이 “정치적 반대에 관하여”(Von den politischen Gegenwirkungen)라는 글을 통해 제기한 ‘거짓말 금지의 원칙은 시민사회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비판에 대한 칸트의 반박글이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거짓말 논쟁’의 승패가 아니라 콩스땅의 비평글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나타난 거짓말에 대한 칸트의 견해이다. 이 글에서 콩스땅이 칸트의 주장이라고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 도덕원칙은, 만일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회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어떤 독일 철학자[칸트]가 이 원칙으로부터 이끌어낸 매우 직접적인 결론 속에서 갖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쫓고 있는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집에 숨어들었는지 아닌지를 묻는 살인자에게 하는 거짓말은 죄가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⁵⁾

이 구절에서 콩스땅이 칸트를 향해 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은 ‘진실을 말하는 것, 즉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도덕원칙이라면, 그것은 모든 사회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칸트는 이 ‘거짓말 논쟁’을 통해서 콩스땅과는 정반대로 ‘거짓말은 사회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를 옹호하기 위한 칸트의 논증이 이 논문의 핵심인데, 이 칸트의 반박 논증은 도덕적 의무에 반하는 거짓말은 인간의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진실성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법 그 자체의 근원을 손상시키

4) I. Kant, *Über ein vermeintes Recht aus Menschenliebe zu lügen*, 637-643/425-431쪽.

5) 같은 글, 637/425쪽.

는 것으로서 결국 인류 일반을 해치는 행위와 같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퐁스땅이 칸트가 했다고 추측하는 이 거짓말 사례에 준하는 것을 칸트가 직접 한 적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칸트가 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칸트는 자신의 집으로 숨어들어온 친구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는 위협자가 묻는 친구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비록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예상에서 하는 거짓말일지라도 그것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더욱이 선한 의도에서 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거짓말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과론적 논리를 펼치면서까지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칸트가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짓말은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도덕원칙 즉 도덕법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칸트에게 정언명법은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최종 척도이다. 일종의 도덕성 테스트 절차로서 각자의 행위 준칙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야 그것은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으로 승인된다. 타인에 대한 정직의 의무 혹은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은 모두 완전한 의무로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의무들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칸트의 보편법칙의 정식은 다음과 같다: “너의 준칙이 보편법칙이 되기를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⁶⁾ 이 보편법칙의 정식으로 표현된 정언명법은 도덕적 의무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도덕규칙에 따라야 하는 의무라는

6)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51/421쪽. 보편법칙의 정식은 칸트가 ‘유일한 정언명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칸트의 윤리학을 가장 대표하는 도덕성의 원리다. 이성적 존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덕법칙이라는 특성 때문에 칸트 윤리학이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문제들이 주로 이에서 비롯된다.

것을 적시하고 있다. 이로부터 구체적인 정언명령들, 즉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도덕원칙들이 연역된다. 이를테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 약속을 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마라, 진실을 말하라,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라,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한다 등등. 따라서 위의 칸트의 ‘거짓말 논쟁’에서 거짓말이 허용될 수 없는 이유도 거짓말은 보편적 규칙이 될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을 보편화하면 그 규칙 자체를 파괴하는 모순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누구나가 거짓말을 보편적 규칙으로 삼을 경우, 그것은 사회 혹은 공동체의 성립과 유지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목적의 왕국의 정식도 위배한다: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언제나 그의 준칙을 통하여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에서 한 사람의 입법하는 성원인 것처럼 행위해야 한다.”⁷⁾ 이 준칙은 각 개인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칙을 제정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기에 내가 스스로 거짓말 금지를 법칙으로 제정하면서 동시에 거짓말해도 좋다는 규칙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자기 파괴적인 법칙이 될 것이며, 법의 준수와 약속의 이행과 같은 법적 기반 위에서 유지되는 사회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인 거짓말 금지의 원칙이 자기 자신에 부과하는 완전한 의무라면, 정직의 의무는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이다. 즉,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상정하며, 정직은 정직해야 할 상대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 때 그 행위의 주체는 ‘나’이다. 그런 점에서 거짓말과 정직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의 의무와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어법에서는 거짓말 금지의 원칙과

7) 같은 글, 72/438쪽. 칸트는 이를 ‘자율성의 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정칙은 칸트 스스로 세 번째 정언명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목적의 왕국의 정식과의 관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

정직의 원칙의 대상을 뒤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네 자신에게 정직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혼용은 그 말을 하는 당사자의 의도 내지는 의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결국 이러한 정직과 거짓말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면, 거짓말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타인을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정언명법의 정식에도 배치된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타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 되므로 인간성의 정식에도 위배된다. 칸트의 인간성의 정식은 이렇다: “너는 인간성을 너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⁸⁾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의 무조건적 금지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에도 반한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 혹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위험해 처하게 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때로는 칭찬하거나 칭송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렇다면 칸트는 왜 이렇게 이런 입장을 시종 견지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편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칸트의 법칙과 원칙 중심의 윤리적 사고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거짓말 논쟁’의 경우처럼 이들 정언명법의 정식들의 적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도 허용한다.

매킨타이어가 덕의 윤리가 아니라 의무의 윤리에만 치우친 칸트의 윤리학과 관련해서 “칸트의 도덕적 저술에서 우리는 도덕이란 규칙에 복종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생각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시야에

8) 같은 글, 61/429쪽. 이 정식은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성의 정식’ 혹은 그냥 ‘목적 자체의 정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성적 존재자 혹은 이성적 본성에 대한 칸트의 이해가 가장 집약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정식이다. 그러나 이 또한 구체적 이해가 갖는 추상적 성격 즉 현실적 적용 가능성의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다.

서 사라져 버리는 지점에 이르렀다.”⁹⁾라고 평가할 때, 이는 적어도 칸트의 윤리이론이 갖는 맹점을 정확히 지적한 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도덕이란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칙의 문제라고 보는 칸트의 도덕적 관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칸트의 문제는 보편적 도덕원칙 일변도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무차별적 적용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덕은 보편타당한 규칙을 따르는 행위이어야 한다. 만일 보편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위지침을 제시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반대로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지침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도덕적 지침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도덕과 윤리란 공정성과 공평성 내지는 평등한 정의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도덕은 개인적 요구와 지침에만 머물고 말게 되며, 어떤 행위에 대한 비교 우위를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도덕의 무용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편타당한 도덕규칙을 정당화하려는 칸트의 의무론은 이 같은 도덕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칸트의 문제는 도덕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것의 적용 대상의 가능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칸트의 원칙 중심의 도덕이론이 “형식들 간의 좀 더 명확한 구분 기준을 생략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¹⁰⁾

진실을 말해야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규칙의 경우 칸트는 이 규칙을 거짓말 혹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행위자 혹은 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칸트의 ‘거짓말 논쟁’의 사례에서 질문을 받는 자(거짓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자)와 질문을 하는 자(진실을 요구하는 자), 그리고 그 질문의 상관자(친구인 도피자)는 주어진 하나의 상황에서

9) A. MacIntyre, *After Virtue : A Study in Moral Theory*, 219쪽.

10) 김수배, 「칸트 윤리학에서 원칙과 사례의 갈등 -‘결의론’을 중심으로-」, 59쪽.

각기 다른 처지에 놓여 있는 행위자들 혹은 주체들이다. 칸트의 관점에서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거짓말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말은 보편법칙의 정식을 논리적 측면에서는 개념적 모순을, 실천적 측면에서는 의지적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¹¹⁾

그런데 칸트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만일 이 같은 모순이 허용될 경우의 결과를 고려해 볼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그것이 허용된다면 사회의 존립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¹²⁾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 자체가 목적인 사회나 공동체 혹은 법의 존재 자체를 위한 것이라거나 혹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타인의 도움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부조의 의무가 있다거나, 다시 말해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정립적인 목적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선의지를 바탕으로 한 거짓말 금지의 원칙이 모순 없이 정합적인 결론을 허용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거짓말이 법 그 자체의 근원을 손상시킴으로써 사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마치 거짓 약속의 경우와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이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한 증인의 위증은 자기모순이며, 이의 허용은 사회의 유지와 범죄의 처벌이 목적인 법의 존재 이유의 부정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은 정말로 법과 사회 자체의 존립과 관계하는 행위인

11) Onora O'Neill, "Consistency in Action", 117-127쪽.

12) 칸트가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들고 있는 “내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나는 지킬 의도 없이 어떤 약속을 해도 좋은가?”의 문제 즉 “거짓 약속”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 칸트는 “나는 내가 거짓말을 의욕할 수는 있으나 거짓말하기를 보편법칙으로 의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말하자면 이러한 법칙에 따르게 되면 본래 약속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30/403쪽.

가? 설사 거짓말이나 거짓 약속이 사회의 존립이나 법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협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과 결코 같다고 볼 수 없다. 칸트는 이 둘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는 것 같다.

또한 칸트는 거짓말 논쟁에서 ‘나의 거짓말’ 행위만을 도덕성 평가의 조건으로 삼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서 칸트는 나와 너를 동일한 행위자의 관점에서, 즉 거짓말 행위와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이성적 존재자로서 간주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성적 존재자로서는 모두가 개념적으로 동일한 혹은 동등한 가치를 가질지 모르나, 이성적 ‘인간’으로서는 각각이 개별적 존재자들이며, 따라서 그들 각각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데 칸트는 이를 무시하고 모든 대상에 무차별적으로 정언명법이라는 도덕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은 물론이며,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칸트가 말하는 이성적 존재자는 정언명법의 정식들에 전제되어 있는 도덕적 주체들로서 이성적 본성의 소유자이며, 칸트는 이를 인간성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칸트의 보편법칙의 정식, 인간성 혹은 인격성의 정식, 목적 그 자체로서의 정식, 목적의 왕국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 등은 모두 이성적 존재자의 도덕법칙들이다. 그러므로 이 이성적 존재자의 관점과 차원에서 보편화가 불가능한 준칙으로서 거짓말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용인되어서도 안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 대상이 누구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수립적인 자율적 입법자이며, 그러한 목적의 왕국의 성원이며, 자기 목적적 존재이므로 단 한 번의 예외의 허용도 그것은 논리적 및 개념적 차원에서 사회 존립의 불가능성이나 법 그 자체의 정신의 훼손과 같은 자기 모순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인간은 개별적 주체요 행위자이며, 다른 그 누구와도 구별되는 차이를 갖는 현실적 존재이며,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이면서 동

시에 감성적 존재자인 이성적 인간이다. 그것은 어떤 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이성적 존재자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그것은 반드시 이성적 인간 즉 개별적 존재자들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 논쟁’에서 표면적으로 사회 존립이나 법 정신의 훼손이 초래하는 결과론적 고려에 근거해서 거짓말을 허용할 수 없다는 칸트의 논리가 언뜻 공리주의적이며 따라서 반의무론적이라고 비판받을 소지도 있지만, 칸트의 진의는 결과의 유용성/공리성을 따져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목적적 존재인 이성적 존재자 자신이 수립한 사회와 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모순적이며, 이를 근거로 해서 들고 있는 반사실적 인과적 추론에 기초한 ‘결과적 고려’이기에 그것은 공리주의적 논리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 규칙과 덕, 행위와 행위자

무엇이 옳고 그른 행위인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할 수 없는 이론은 윤리이론이 아니다. 앞서 칸트의 의무론은 옳고 그른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도덕규칙의 보편성, 절대성, 무조건성, 필연성, 자율성을 특징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은 행위자의 준칙과 동기의 도덕성을 표현한다. 도덕적 동기는 행위 준칙의 근거와 이유의 보편화 가능성, 준칙을 행위의 원칙으로 삼는 의지의 무모순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반면에 칸트의 의무론과 마찬가지로 도덕규칙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행위의 결과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으로서 공리주의를 꼽을 수 있다. 다양한 공리주의 이론들 중에서도 특히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공

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든 규칙 공리주의든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한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한다. 특히 공리주의 기본이론을 정교화 했다고 평가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윤리적 입장은 결과주의적 규칙 공리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그의 규칙 공리주의는 덕 윤리학의 면모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³⁾ 덕 윤리학은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도덕성의 평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덕과 성품을 좋은 행위자 혹은 유덕한 행위자의 특성으로 이해한다.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덕 윤리학과 공리주의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따져보자.

먼저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윤리이론이므로 한 행위가 유용성의 원리 혹은 공리성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칸트의 ‘거짓말 논쟁’ 혹은 ‘거짓 약속의 사례’에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그것도 칸트의 경우와 달리 나의 행위가 미치게 되는 관련자들 모두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관련 대상자들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또한 칸트와 반대로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악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된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은 행위 공리주의든 규칙 공리주의든 모든 공리주의 이론들에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거짓말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점에서 옹호되기 어려운데, 특히 권리나 정의의 문

13) 덕 윤리학은 행위 중심이라기보다는 아닌 행위자 중심이며, 따라서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해야 하는가보다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중시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좋은 사람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려면 당연히 그것은 의무론적 개념들(옳음, 의무, 책임) 보다는 아레테적(areteic) 개념들(좋은, 탁월성, 덕, 성품)을 근본 개념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맹주만·김은미, 「밀의 공리주의와 덕 윤리학」; 맹주만, 「칸트와 ‘행복한 자선가」」; R. Hursthouse, *On Virtue Ethics*, 25쪽; M. Nussbaum, “Virtue Ethics: A Misleading Category?”, 170쪽.

제에서 더욱 그러하다. 익히 알려진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칸트의 ‘거짓말 논쟁’의 사례를 변형해서 고려해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벤담식의 행위 공리주의의 경우, 그때그때의 행위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가령 칸트도 고려하듯이, 나의 서툰 진실 혹은 거짓말로 인해 어떤 후속 행위가 벌어질지, 살인의 위협자가 정말로 도피자를 살해할 것인지, 혹시 도피자가 이미 도망을 간 것을 모르고 거짓말을 했다가 오히려 내 말을 듣고 도피자를 쫓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살인자가 도피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해서 내리야 하는 판단의 조건들이다. 그런데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행위를 결정해야 하거나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 동안 관련 사실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결정하든,¹⁴⁾ 만일 도피자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 내지는 진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공리주의적 원칙에서 그렇게 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은 공리주의는 선의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뻔한 거짓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때면 이 같은 판단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가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결국 이런 추론은 어떤 경우든 거짓말 자체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거짓말을 통해 다수가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개인의 불가침적인 권리의 침해나 무고한 사람의 희생 등은 무시해도 좋다는 결론도 허용한다. 이 역시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적 직관에 반한다. 우리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 자체가 결과의 고려와 상관없이 나쁘다는 우리의 직관을 반영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직관은 때로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선의의 거짓말은 용인될 수도 있다고 생

14) R. M. Hare, “Ethical theory and utilitarianism”, in Sen, A. and Williams, B. (ed.), *Utilitarianism and beyond*, 31쪽.

각한다. 공리주의는 이 모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대답도 해주지 못한다.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과 뻔한 거짓말을 구분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혹은 불명료성이라는 한계와 소수자의 권리나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약점 등 행위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규칙 공리주의는 피할 수 있어 보인다. 규칙 공리주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들을 일반화하여 이를 규칙으로 제시한다. 가령, 장기적으로 관련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계산을 한 결과,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규칙 공리주의 관점에서 거짓말은 나쁜 것이 된다. 아마 어찌면 현재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 직관도 이러한 사회적 유용성, 즉 공리성의 오랜 유산일 지도 모른다. 또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권리나 정의에 대한 일반 규칙이 옹호될 수도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일반 규칙들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는지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 삶과 죽음, 소유권 등의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¹⁵⁾ 그리고 만일 일반규칙으로서의 거짓말 금지와 현재의 부인할 수 없는 거짓말의 필요성이 충돌할 경우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규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정의의 원칙의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행위 공리주의에 의존하는 것이다. 결국 규칙 공리주의 역시 행위 공리주의가 지닌 문제와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덕 윤리학은 칸트의 의무론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역시 이와 같은 문

15) Peter J. Hammond, "Utilitarianism, uncertainty and information", in Sen, A. and Williams, B. (ed.), *Utilitarianism and beyond*, 85-102쪽.

제, 즉 도덕적 행위의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정당화하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덕 윤리학은 옳은 행위에 대한 윤리이론을 갖고 있는가? 저들 이론과 달리 덕 윤리학은 거짓말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¹⁶⁾ 그들은 선의의 거짓말은 용인이 되며, 그에 대한 시비를 독립적인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그 같은 판단을 한 행위자, 즉 그 행위를 한 사람에 귀속시킨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옳은 선택이 된다. 규칙 공리주의자인 밀 역시 질적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덕 윤리학과 양립할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한다. 밀은 최대의 질적 쾌락의 추구를 공리성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쾌락 선택의 자격을 ‘유능한 판단자’의 선택에 맡긴다. 즉,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판단이 곧 최대 이익의 최선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도덕규칙의 준수와 유능한 판단자의 결정은 일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보장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가령,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결정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판단자의 몫인데, 결국 그 판단자가 누구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따라서 이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판단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실현과 관계가 있을 뿐, 일반 규칙으로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

16) 덕 윤리학이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의 대안 이론으로서 시도하는 이론적 목표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이상적 인간 모델의 제시. 둘째, 이상적 인간에게서 요구되는 덕들의 목록, 셋째, 덕의 획득 방법. 이와 같은 목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소크라테스의 계승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에피쿠로스학파나 스토아학파의 행복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덕의 철학이 대체로 형이상학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었다면, 현대의 덕 윤리학은 형이상학적 가정 없는 이론을 제시하려 한다.” 맹주만·김은미, 「밀의 공리주의와 덕 윤리학」, 331쪽; R. Hursthouse, *On Virtue Ethics*, 25쪽; 맹주만, 「칸트와 ‘행복한 자선가’」, 112-114쪽.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밀이 처하게 되는 문제에 덕 윤리학 역시 동일하게 직면할 공산이 크다. 공리주의적 도덕규칙은 아니지만 덕 윤리학 역시 유덕한 성품을 소유한 행위자의 선택과 결정이 곧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하지만,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자의 개인적 자격에 맡긴다는 점에서, 누구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한, 도덕적 선택을 임의적인 문제로, 극단적으로는 아무래도 좋은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덕 윤리학은 덕규칙 같은 일반 원칙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 그것은 행위자 일반이 지닌 공통의 성품 및 그에 따른 자격에 근거해서 그 가능한 도덕원칙으로 덕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령 덕 윤리학에서는 공감 능력이 “일반 원칙 혹은 덕 규칙을 준수하려는 유덕한 행위자들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수단”¹⁷⁾이 될 수 있다. 공감은 행위자가 소유하는 있는 감정 능력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에 대한 도덕적 감응 능력이며, 일반적 능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 윤리학의 도덕규칙을 일반화 해보면 ‘유덕한 행위자가 하는 행위는 옳은 것이다.’ 혹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성품을 소유한 유덕한 행위자가 하는 행위는 옳은 것이다.’와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¹⁸⁾ 그리고 이런 덕규칙에 따라서 유덕한 행위자가 하는 행위들 중의 하나를 실천적 지침으로 제시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혹은 ‘유덕한 행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준하는 다양한 실천적 지침의 목록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덕을 행복의 한 요소로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밀의 ‘자격 있는 판단자’¹⁹⁾의 경우처럼²⁰⁾ 규칙 공리주의의 도

17) Stephanie Collins, *the Core of Care Ethics*, 25-26쪽.

18) R. Hursthouse, *On Virtue Ethics*, 28쪽 이하 참조.

19) J. S. Mill, *Utilitarianism*, 9쪽.

덕원칙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는 이와 같은 덕규칙은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가? 여전히 우리는 “그럼 누가 유덕한 행위자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그리고 덕 윤리학은 이러한 실천적 지침을 언제나 일관되게 견지할 수 있는가? 유덕한 사람도 모든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또한 서로 다른 사람이 모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가 다른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하는 바로 그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우며, 또 가르치기도 어려워 보인다.

덕 윤리학의 ‘그 누구’가 밀과 같은 덕 공리주의적 특징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는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 즉 유덕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어떤 특성이나 성향이 포함될 것이다.²¹⁾ 밀은 말하기를 “자신의 습관이나 유혹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습관이나 유혹의 주인인 사람은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느끼는 사람이다. 그는 설사 습관이나 유혹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들에 저항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자유롭게 느끼는 사람은 동시에 확고한 덕을 소유한 사람이다.”²²⁾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가? 유덕한 사람이 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한다면, 유덕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며, 다시 그 사람이 유덕한 사람인지를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부덕한 사람과 구별해주는 성품 특성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유덕한 사람이 지닌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설명은 순환적이다. 이런 종류의 순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최소한 덕과 부덕을 가릴 수 있는 성품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어

20) Richard Kraut, “Two conception of happiness”, 168쪽, 178쪽.

21) Fred R. Berge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18쪽.

22) J. S. Mill, *A System of Logic*, 1023-1024쪽.

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령 거짓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먼저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덕 윤리학이 옳고 그름에 대한 선행적인 이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함축한다. 때문에 칸트의 의무론과 결과주의 공리주의에 비하면 덕 윤리학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 저들에게는 적어도 행위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실천적 행위지침 이전에 먼저 주어져 있지만, 덕 윤리학은 그럴 수 없다.

4. 칸트적 의무론과 거짓말

그러면 덕 윤리학이나 공리주의와 달리 칸트의 의무론에 근거해서 과연 예외적으로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 혹은 보편적 규칙의 발견은 불가능한가? 나는 칸트의 정신, 즉 도덕성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나타내는 보편성, 공평성, 형평성, 공정성, 정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선의의 거짓말이 승인되는 보편적 규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것은 보편타당한 도덕성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칸트의 것이면서 동시에 칸트가 불허하는 예외의 가능성을 허용한다면 점에서 반칸트적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외의 허용가능성도 보편성, 인간 존엄성, 인간성, 인격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를 칸트의(Kant's) 의무론이 아닌 ‘칸트적(Kantian) 의무론’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 가능성을 정당화해 보자.

먼저 ‘거짓말 논쟁’으로 되돌아가 보면, 답변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칸트는 1)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거짓말을 분리시키고 있으며, 2) 거짓말을 나 자신의 문제로만 인식한다. 즉, 상대방과 제3자

에 대한 판단은 배제 혹은 보류한다. 더욱이 3) 거짓말의 허용이 초래하는 사회의 존립 불가능성이나 법 정신의 훼손 등을 이성적 존재자의 관점에서 고려한다. 즉, 질문을 하는 자, 질문을 받는 자, 그리고 숨어 있는 제 3자를 동일한 하나의 이성적 존재자로 인식한다.

그러면 이성적 존재자란 무엇인가? 사회는 사회 자체를 위해서, 혹은 법은 법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사회와 법은 현실적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성적 존재자의 관점 역시 그러한 인간을 위한 것이며 입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간을 위한 것, 그것이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며, 인간성의 정식 혹은 목적 자체의 정식이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이 인간성을 이성적 존재자의 관점에서 정언명법의 정식들처럼 형식적으로만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적 규정은 배제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 규정 없이 정언명법에 따라 행위하려는 도덕적 동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단순히 칸트처럼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동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선의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선행적으로 법칙이 관계 맺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목적적 가치의 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내용을 가져야 하며, 그 내용은 이성적 존재자가 아닌 개별적 인간 혹은 이성적 인간에 대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 존재자와 동일한 형식적 의미만을 갖는 인간성, 인격성, 존엄성이라는 말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 칸트 역시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령,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의 ‘덕론’에서 인간성을 순 이성적 존재자의 도덕적 관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성적 인간과 맺고 있는 관계도 표현해내고 있다. 칸트의 이런 기조는 실제로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이성비판』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제대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칸트의 책임이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함께 기뻐함과 함께 슬퍼함’(도덕적 공감)은 타인의 즐거움과 고통의 상태에 대한 쾌 또는 불쾌의 감성적 감정(공감, 동정적 감각)이며, 자연은 이를 위한 감수성(Empfänglichkeit)을 이미 인간 안에 심어 놓았다. 그러나 이 감수성을 활동적이고 이성적인 호의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비록 조건적이긴 하지만 인간성이라는 이름 아래서의 특별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은 단순히 이성적 존재자가 아니라 이성을 품수받은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의무는 자신의 감정에 관해서 서로에게 전달하는 능력과 의지(실천적 인간성) 안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자신이 주는 것인 즐거움이나 고통의 공통 감정에 대한 감수성(감성적 인간성) 안에 놓일 수도 있다. 전자는 자유로우며, 그래서 동정적(느낌의 자유로운 공유)이라 불리고, 실천이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부자유스러우며(느낌의 부자유스러운 노예적 공유), 전해지는 것이며, 교감고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곁에서 살고 있는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전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²³⁾

여기서 칸트는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하며, 또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답한다. 그리고 이에 는 인격성을 포함해서 이성적 존재자 및 도덕적 존재자와 호환 가능한 의미를 갖는 인간성의 지위가 감성적 존재자이기도 한 현실적 인간과 관련해서 규정된다.

하나는 칸트가 그 스스로 좀 더 명료하게 구체화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바로 감수성과 관련해서 느끼고 있는 도덕적 공감이다. “타인의 즐거움과 고통의 상태에 대한 쾌 또는 불쾌의 감성적 감정(공감, 동정적 감각)”으로서 “함께 기뻐함과 함께 슬퍼함(도덕적 공감)”은 모든 이성적 존

23) *Metaphysik der Sitten*, 593-4/456-7쪽.

재자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지녀할 도덕적 태도의 토대가 된다. 우리는 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유의미하게 답하려면 선행적으로 나와 너가 같은 인간 존재라는 공동의 의식 및 유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것은 정언적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대답은 공허하다.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존엄성의 대상인 것은 그/그녀가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지, 단지 그리고 전적으로 그/그녀가 이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성, 인격과 인격성이 분리될 수 없듯이 바로 그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언명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인간을 그 내용으로 포함한다. 즉, 정언명법이 표현하는 도덕성의 형식이 이성적 존재자라면, 그 내용은 인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저 타인의 즐거움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칸트는 그 실질적 연관성을 거부하지만 이는 우리가 정언명법에 근거해서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할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해준다.

다른 하나는 칸트의 입장에서는 내용적 관점에서 이렇게 인간과 인간성이 공속한다는 것이 형식적 관점에서는 도덕성 및 도덕적 동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도덕성이란 언제나 “실천이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칸트의 도덕철학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 즉 도덕성이란 전적으로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에 맞게 대우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것이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이며 정언명법이다. 칸트에게 그러한 존엄성의 구현은 정언적 명령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행위하고자 하는 것만을 도덕적 동기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덕법칙과 도덕적 동기 사이에 감정과 같은 어떤 실질적 내용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이러한 이성적 존재자가 갖는 법칙적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결코 허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이성적 존재자의 관점, 즉 인간

성의 존중은 다른 아닌 정언명법의 정식들이 지닌 성격, 즉 보편성, 인격성, 인간성, 자율성과 같은 성격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의 도덕성을 규정하는 특징들이다.

칸트의 관점에서는 인간 존엄성의 구현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에 어떤 감정적 계기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의무를 감정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의무 아래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감수성을 활동적이고 이성적인 호의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비록 조건적이긴 하지만 인간성이라는 이름 아래서의 특별한 의무이며,” “이 의무는 자신의 감정에 관해서 서로에게 전달하는 능력과 의지(실천적 인간성) 안에 놓일 수 있다.” 이렇듯 비록 칸트가 이 둘을 철저히 분리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역으로 이 둘은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두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도덕성 이전에 이 둘은 상호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을 동시에 규정하는 조건들이다.²⁴⁾ 이것이 도덕적 행위의 출발점이다. 이성적 존재자와 감성적 존재자가 분리되지 않는 현실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왜 완전한 것이든 불완전한 것이든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해준다. 이는 또한 의무와 감정의 관계에서 나 자신에 대한 것과 타인에 대한 것이 동일한 것일 수 없음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의무 아래 놓인 감정은 나 자신과 타자에 관계한 것이 동일한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감성적 존재자로서 나와 너는 다른 존재이므로 그에 대한 도덕적 고려 또한 구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비록 그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막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

24) 행위의 동기로서 감정적 동기와 도덕적 동기의 상호 관계와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칸트의 견해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맹주만, 「칸트와 흄 - 도덕적 이성과 공감」, 195-218쪽.

적 직관에 부합한다. 하지만 칸트의 ‘거짓말 논쟁’이나 ‘거짓 약속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왜 그런가? ‘거짓말 논쟁’으로 돌아가 보자. 이를 위해 직접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인간성의 정식 혹은 목적 자체의 정식을 다시 살펴보자.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인간성의 정식 혹은 목적 자체의 정식 : 너는 인간성을 너의 인격에
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여기서 인간성을 목적 자체로 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반영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내용은 정언명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든 사례들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 자살 금지의 의무에서 나타난 생명 존중, 거짓말이나 거짓 약속에 나타난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이성적 목적의 공동체, 사회의 존립, 법의 정신의 수호, 목적적 존재자들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성적 존재자들의 공동체의 유지 등.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로 타인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적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통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경우 비록 칸트의 보편법칙의 정식에 반하는 행위가 되겠지만 그것을 비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이것은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하는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가? 만일 이것이 타당하려면, 그래서 칸트가 주장하는 예외 없는 거짓말 금지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편적인 이성적 존재자가 아닌 개별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가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럴 경우 이 경우의 거짓말은 비록 보편법

칙의 정식에는 반하지만, 인간성의 정식에는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같은 선택을 모순 없이 행할 수 있지 않은가? 거짓말이 허용될 수 있는 인간적 조건, 즉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다거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요구되는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할 것이다.

칸트는 ‘거짓말 논쟁’에서 질문을 하는 자, 질문을 받는 자, 그리고 질문의 실제 주인공인 숨어 있는 제3자, 이 세 명의 대상을 하나의 동일한 이성적 존재자, 즉 하나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3명을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자, 즉 ‘이성적 인간’들로 대우해야한다면, 그들을 각각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로 대우해야 한다. 만일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면,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가 구분될 수 있듯이 그에 따른 우리의 도덕적 의무도 달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각각에 대해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거나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말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도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주장이 성공을 거두려면 칸트의 정언명법의 정식들은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도덕적 가치와 내용을 각각의 정언명법의 정식의 조건들 중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하며, 또한 정언명법의 적용 범위와 그 대상도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과 제한의 최상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 인격성, 자율성 등의 가치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인간적 가치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는 저 가치 규정들을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과 동일시했다.

만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적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타인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 선의의 거짓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하지 않거나 혹은 인간성을 존중하는 선택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때에는 보편

법칙의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에 모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정언명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구별 내지는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별적 인간의 유사한 상황과 경우에 제한해야 하며, ‘거짓말 논쟁’에서의 도피자와 같은 유사 사례에 한정해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의 경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경우, 임종 순간까지 진실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등등. 그리고 적용 범위의 제한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칸트의 도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이 모두가 인간성의 정식을 따른 점에서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한 준칙들이 갖는 의도의 도덕성은 칸트가 애초에 보편법칙의 정식을 통해서 정초하고자 했던 도덕적 요구에 부합한다. 물론 남아 있는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 존엄성의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 또는 우리의 생각은 칸트의 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열려 있는 문제이다. 자살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칸트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상과 반대로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동일한 이유 때문에 존엄사와 같은 자살을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⁵⁾

25)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익명의 한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인간 존엄성의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인간 존중 행위의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하나의 실천 행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그 행위가 인간성을 존중했는가 아닌가는 이미 인간 또는 인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규정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규정 없이 우리의 판단이 선험적인 방식으로 발견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없이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그저 ‘열린 문제’로 내버려 둔다면 논자의 주장은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심사자는 논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거짓말 논쟁’ 뿐 아니라 다른 경우들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고려하면서 이 작업이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 이 글에서 보여주려 한 제한된 목적을 고려하면, 나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른 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현재의 글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점들에 한정해서 부연하자면,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두

누군가를 해치고 도피한 친구가 아니라 살해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칭송하기도 한다. 도덕적 가치를 갖는 목적을 위해 하는 선의의 거짓말, 혹은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면서 다른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이때의 거짓말은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 행위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칸트가 거짓말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는 반할지 몰라도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아닌가!

가치를 보여주려고 했다. 하나는 실천적 행위지침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칸트의 정언명법과 같은 객관성과 보편성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기준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과 행위의 차별적 고려는 그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 때 그 차이가 바로 인간 존엄성의 존중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한 행위를 하려는 마음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여기까지였다. 다만 심사자의 지적처럼 열린 문제로서 인간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지 않았다. 아마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나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칸트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존엄한 존재인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이 다름 아닌 존엄성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논리학 강의』에서 스스로 설정한 철학의 네 가지 근본물음 중에서 최종 물음이었던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미결정 내지는 차이가 윤리적 상대주의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본질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결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해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며, 그 이유가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면, 아직 어떤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하나의 타당한 행위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윤리적 상대주의를 넘어선 어떤 지점에서 있는 것은 아닐까!

6. 나오는 말

나는 실천적인 행위지침을 제공하려는 윤리이론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성공을 거두려면, 한편으로는 일반적 도덕규칙으로서 거짓말 금지의 원칙과 함께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기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성에 대한 요구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덕 윤리학, 칸트의 의무론, 공리주의 등 어떤 윤리이론도 이 일을 해내는데 만족스러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을 칸트의 의무론에서 발견한다. 그것은 온전히 칸트의 도덕철학에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여전히 칸트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는 그것을 칸트적 의무론이라고 불렀다.

칸트의 윤리이론은 보편성에 대한 요구는 훌륭하게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도덕적 내용을 갖는 일반원칙으로서의 한계를 안고 있다. 선의의 거짓말을 불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이 같은 보편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 혹은 무차별적 적용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초래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칸트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법칙과 감정, 감정적 동기와 도덕적 동기와 같이 그것들이 인간 행위 일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계와 영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한다. 나는 칸트적 의무론의 대강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내재적 문제들을 칸트의 도덕철학의 근본정신을 견지하면서도 수정 내지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점에서 그것은 칸트의 도덕철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윤리 혹은 도덕은 보편성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한, 그리고 칸트의 윤리이론의 몇몇 문제들이 이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칸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수배, 「칸트 윤리학에서 원칙과 사례의 갈등 -‘결의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73집, 철학연구회, 2006.
- 김은미, 「J. S. 밀의 덕 공리주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12.
- 노영란, 「덕 윤리의 행위지침력」, 『철학연구』 제62집, 철학연구회 2003.
- 맹주만, 「칸트와 행복한 자선가」, 『범한철학』 제56집, 범한철학회, 2010.
- _____, 「칸트와 흄 - 도덕적 이성과 공감」, 『칸트연구』 제34집, 2014.
- 맹주만 · 김은미, 「밀의 공리주의와 덕 윤리학」, 『철학탐구』 제30집, 중앙철학연구소, 2011.
- 문성학, 『칸트철학의 인간학적 비밀』,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 이원봉, 「칸트의 윤리학과 감수성의 역할」, 『칸트연구』 제18집, 한국칸트학회 2006.
- 크리스틴 M. 코스가드, 『목적의 왕국』, 김양현 · 강현정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7.
- Anscombe, G. E. M.,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1958).
- Berger, Fred R., *Happiness, Justice, and Freedom: Th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of John Stuart Mil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Collins, Stephanie, *The Core of Care Ethics*, Palgrave Macmillan, 2015.
- Crisp, R. and Slote, M. (ed.), *Virtue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Guyer, Paul, (ed), *Kant's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 Critical Essay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8.
- Herman, B., “rules, motives, and helping action”, *Philosophical Studies* 45(1984).
- Hursthouse, R., *On Virtue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Kant, I., *Immanuel Kant Werkausgabe in zwölf Bänden*, Herausgegeben von

- Wilhelm Weischede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8.
- _____, *Kants Gesammelte Schriften*, hg. von der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und Leibzig, 1902ff.
- Kraut, Richard, “Two conception of happiness”, *Philosophical Review*, Vol. 88, No. 2(1979).
- MacIntyre, A.,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 Mill, J. S. *Utilitarianism*, (ed.) Oskar Piest, The Liberal Arts Press, 1957.
- _____, *A System of Logic*, [Ebook 27942], 2009. <http://www.gutenberg.org>
- Nussbaum, M., “Virtue Ethics: A Misleading Category?”, *Journal of Ethics* 3(1999).
- ONEill, Onora, “Consistency in Action”, in Paul Guyer, *Kant's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 Critical Essays*.
- Schneewind, J., “The Misfortunes of Virtue”, *Ethics* 101(1990).
- Sen, A. and Williams, B. (ed.), *Utilitarianism and bey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Virtue, Rule, and a Lie

Jooman Maeng (Chung–A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will try to show the third possible solution based on critical evaluation under which virtue ethics, Kant's ethics, and utilitarianism failed theoretically as they didn't succeed in provide practical action-guide. I think an ethical theory need to be able to admit of 'a white lie' if it would be one for right and wrong. For this I will examine 'Lie Argument' of Kant as an example. On this processing, finally I will take the view that it would be modified and altered Kant's deontology as practical action-guide theory.

Key words: virtue, moral rule, and lie, virtue ethics, deontology, utilitarianism, action-guide

맹주만 e-mail: maengjm@cau.ac.kr

투 고 일	2017년 07월 13일
심 사 일	2017년 07월 27일
게재확정	2017년 08월 17일